

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1. 4. 24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4월 9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4월 9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46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2001. 4. 23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가. 제안이유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
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
설치 촉진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
지를 증진하고,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입지선정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량이 1일
15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,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
능력 50톤 이상으로 정함(안 제2조).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“범시민추진협의
회”를 구성·운영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.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직접영향권
외에 간접영향권안의 주민들에게도 필요할 경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

도록 함(안 제5조).

-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0조)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현수)

- 제1조(목적)는 동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고,
- 제2조(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)는 법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6조에서 정한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미만인 경우조례에서 대상시설의 규모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결정·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음
- 제3조(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)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을 위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범시민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
- 제4조(주민지원기금의 재원)는 법제21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 제2항 및 령제25조(주민지원기금의 산정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
- 제5조(주변영향지역 지원등)는 법제22조(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) 및 령제27조(주변영향지역지원등)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간접영향권에 대하여도 가구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에 있어서 주민지원협의 체의 협의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
- 제6조 내지 제9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제10조(주민감시요원의 수당)은 법제25조(지역주민의 감시)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

것임

○ 제11조(시행규칙)은 동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려는 것으로

○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